

[별표 6] <개정 2002.12.2>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3조의2제1항관련)

구 분		측정회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광역 및 지방 상수도	하천수 복류수	월 1회 이상	pH, BOD, SS, DO, 대장균군	
		분기 1회 이상	Cd, As, CN, Hg, Pb, Cr,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3월, 6월, 9월, 12월
	호소수	월 1회 이상	pH, COD, SS, DO, 대장균군	
		분기 1회 이상	Cd, As, CN, Hg, Pb, Cr,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3월, 6월, 9월, 12월
	지하수	반기 1회 이상	Cd, As, CN, Hg, Pb, Cr, 음이온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간이 · 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	반기 1회 이상	pH, BOD, SS, DO, 대장균군	
		2년 1회 이상	Cd, As, CN, Hg, Pb, Cr,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호소수	반기 1회 이상	pH, COD, SS, DO, 대장균군	
		2년 1회 이상	Cd, As, CN, Hg, Pb, Cr,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지하수	2년 1회 이상	Cd, As, CN, Pb, Cr, Hg, 음이온계면활 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 티온,	
--	-----	-------------	--	--

비고

1. 채수지점

-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 나. 복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를 한다.

2. 검사방법

- 가. 불소, 세fp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및 지하수항목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 나. 기타 전항목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